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매년 5월 25일을 ‘차의 날’로 지정함(안 제19조의2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